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8892 |
|----------|-------|

발의연월일 : 2026. 5. 8.

발 의 자 : 김영환 · 김태선 · 박홍배
박용갑 · 박 정 · 서영교
박은정 · 허 영 · 박상혁
이재관 · 이기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직권정정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에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 우려나 행정 편의주의적 태도로 인해 이를 방치하는 경우,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권리 구제 방안이 부재함. 정정 대상 토지 소유자라 하더라도 정정 신청을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나 확정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과도한 입증 부담을 안게 됨. 결과적으로 지적소관청의 소극 행정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송사 비용 등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행정적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지적은 국가 행정의 기초이자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결되는 공적

장부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이 중요하므로, 소관청의 부작위로 인해 지적 불일치 상황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행정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권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청이 권고나 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급기관이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84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 정정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대하여 그 정정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권고 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조사·측량하여 정정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정정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권정정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